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04
----------	------

제출년월일 : 2022년 5월 2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건물 에너지 절약 시민운동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이외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품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들의 친환경 행동 유도를 위한 녹색실천마일리지제 신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에코·승용차마일리지 통합 사업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운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친환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칭 변경
- 나. 친환경 마일리지 및 녹색실천마일리지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4호)
- 다. 녹색실천마일리지 적용대상 및 참여 신청 조항 신설(안 제4조제3항)
- 라. 마일리지 통합운영 조항 신설(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5조 및 67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2. 3.21. ~ 4. 11.)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친환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에너지절약”을 “친환경 생활 실천”으로,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를 “친환경 마일리지”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친환경 마일리지”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녹색실천 마일리지를 포함한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총칭을 말한다.
3. “승용차마일리지”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인 감축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말한다.
4. “녹색실천마일리지”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이외의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생활실천 활동을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에너지절약”을 “친환경 생활 실천”으로,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를 “친환경 마일리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를 “친환경 마일리지”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녹색실천마일리지는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활동에 참여 신청한 개인회원 또는 단체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녹색실천마일리지의 경우 친환경 활동 참여 사업의 홈페이지 가입, 마일리지 간 연계 또는 그 외 방법을 통해 참여 신청 및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및 녹색실천마일리지의 참여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탈퇴할 수 있다.
- ③ 승용차마일리지 가입자 중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부정행위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권 탈퇴 처리할 수 있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 마일리지”를 각각 “친환경 마일리지”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녹색실천마일리지 운영) ① 시장은 녹색실천마일리지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친환경 생활실천 활동을 위한 정보와 기술을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환경 생활실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친환경 생활실천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녹색실천마일리지 홈페이지 등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녹색실천마일리지 참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0조) 중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 마일리지”를 “친환경 마일리지”로, “지식보급”을 “자발적 실천문화확산”으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마일리지 통합 운영) ①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녹색실천마일리지 등의 친환경 마일리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 마일리지, 녹색실천마일리지 등 친환경 마일리지 통합 및 사용을 위한 홈페이지 등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녹색실천마일리지 등의 통합에 따른 예산 집행, 마일리지 전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u>에너지절약</u>을 유도하여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에 기여하도록 서울특별시 <u>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u>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1. (생 략)</p> <p>2. “승용차마일리지”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에 기여하면 감축정도에</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친환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u>친환경 생활 실천</u>----- ----- ----- <u>친환경 마일리지</u> ----- ----- ----- --.</p> <p>제2조(정의) ----- -----.</p> <p>1. “<u>친환경 마일리지</u>”란 <u>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녹색실천마일리지</u>를 포함한 <u>친환경 생활 실천</u>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총칭을 말한다.</p> <p>2. (현행 제1호와 같음)</p> <p>3. ----- ----- -- <u>줄인</u> ----- -----</p>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말한다.

<신 설>

제3조(기본 책무) ① 서울특별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자치구청장은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4조(적용대상) ①·② (생략)

<신 설>

-----.

4. “녹색실천마일리지”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이외의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생활실천 활동을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기본 책무) ① -----

--- 친환경 생활 실천-----

친환경 마일리지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친환경 마일리지-----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적용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녹색실천마일리지는 쓰레기

제5조(참여신청) ①·② (생략)

<신설>

제6조(탈퇴신청 등) ①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탈퇴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승용차마일리지 가입자 중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부정행위로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권 탈퇴 처리할 수 있으며, 자진 탈퇴 및 직권 탈퇴한 경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간 재참여신청을 제한한다.

<신설>

줄이기, 재활용,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활동에 참여 신청한 개인회원 또는 단체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참여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녹색실천마일리지의 경우 친환경 활동 참여 사업의 홈페이지 가입, 마일리지간 연계 또는 그 외 방법을 통해 참여신청 및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탈퇴신청 등) ①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및 녹색실천마일리지의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있다.

제9조(녹색실천마일리지 운영) ① 시장은 녹색실천마일리지에 참

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친환경 생활실천 활동을 위한 정보와 기술을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환경 생활실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친환경 생활실천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녹색실천마일리지 홈페이지 등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녹색실천마일리지 참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마일리지 통합 운영) ①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녹색실천마일리지 등의 친환경 마일리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 마일리지, 녹색실천마일리지 등 친환경 마일리지 통합 및 사

<신 설>

제9조(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자치구의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추진을 위해 행정적
 •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단체, 공무원 및 기관을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용을 위한 홈페이지 등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녹색실천마일리지 등의 통합에 따른 예산 집행, 마일리지 전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적 지원 등) ① -----
 ----- 친환경 마일리지 -----

 -----.

② ----- 친환경 마일리지 -----

 -----.

제12조(교육 및 홍보) ----- 친환경 마일리지-----

 ----- 자발적 실천문화확산 -----
 -----.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친환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조(녹색실천마일리지 운영)에 따라 비용 발생
- ※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친환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칭 변경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안 제9조제1항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 제공, 제9조제2항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 제공, 제9조제3항 녹색실천마일리지 홈페이지 등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제10조제2항 친환경 마일리지 통합 및 사용을 위한 홈페이지 등의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 발생

나. 전제

- 친환경 마일리지제도인 기존 에코, 승용차 마일리지 외의 새로운 양식의 녹색실천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친환경 활동 참여 사업을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전제
- 사업을 통해 지급(발행)한 마일리지는 소멸시효(5년)까지 사용이 가능하여 5년간 예산의 집행이 지속되는 것을 전제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2022년부터 2026년까지로 함(추계기간 이후로도 계속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3,850,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 (안 제9조제1항)	250,000	250,000	500,000	500,000	500,000	2,000,000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 제공 (안 제9조제2항)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녹색실천마일리지 홈페이지 등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안 제9조제3항)	20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800,000
	친환경 마일리지 통합 홈페이지 등의 관리시스템 구축 (안 제10조제2항)	20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800,000
	소계(b)	700,000	600,000	850,000	850,000	850,000	3,850,000
□ 총 비용(b-a)		700,000	600,000	850,000	850,000	850,000	3,850,000

4. 작성자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과 장 윤재삼
팀 장 곽호진
담 당 소향순

☎ 02-2133-3605

e-mail : shs5710@seoul.go.kr